

규 칙

◆ 서울특별시동작구 규칙 제87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동작구청장 이 창 우 인

2019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 중 “국가 또는”을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나”로 한다.

제2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제2조의2제3항을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사전에 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 의견을 제시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징계등 혐의자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하며, 이하 “시·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시·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적용받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인 경우: 감사원, 교육부 또는 행정안전부의 감사기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또는 소속 시·도의 감사기구

2. 징계등 혐의자가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 감사원, 행정안전부의 감사기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해당 시·군·자치구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감사기구 또는 소속 시·군·자치구의 감사기구

제3조제2호 중 “참고인증지 결정, 기소유예 결정 및 기타 그 밖의 결정”을 “참고인증지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공소제기 결정”을 “공소제기 결정, 기소유예 결정, 그 밖의 결정”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을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 10.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 11.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제9조제1항 중 “제8조 제2항”을 “제8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자목을 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차.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별표 1 비고 8) 중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을 “양성 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별표 2 비고 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한다.

별표3 “징계기준에 관한 개별기준”을 “징계기준에 관한 개별기준(제2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1. 복무 및 품위 3. 직무유기 등 나.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으로 하며, 5. 공사 4. 기타 공사관리 나. 부당 하도급 목인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참조)”을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참조”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1호 중 “법”을 “지방공무원법” 으로 하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의2 제2항”을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의2제2항”으로 하며, 제2호 중 “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하고 비고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징계등 혐의자의 제1호의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악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면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면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사기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지방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5 비고 제3호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비위행위자의 문책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문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제1호자목 및 차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음주운전 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4]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08% 미만인 경우	경장계 또는 중장계	정직~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다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강등~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강등~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강등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임~정직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해임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 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해임~정직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파면~해임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해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정직	

[별표 6]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4조 관련)

업무의 성질	업무와의 관련도	비위행위자 (담당자)	바로 위 감독자	2단계 위의 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결정 사항					
· 중요 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	3	2	1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4	3	2	1
· 일반적인 사항		3	1	2	4
○ 단순·반복업무					
· 중요 사항		1	2	3	4
· 경미 사항		1	2	3	
○ 단독 행위		1	2		

※ 비고

-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말한다.
- “고도의 정책사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및 다수 부처 관련 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을 말한다.
-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란 제2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 개정이유

공무원이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및 이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을 공무원의 비위유형으로 규정하고, 수사기관이 기소유예 결정 및 그 밖의 결정으로 통보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요구권자의 혐의사실 인정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고 바로 징계절차를 진행하며, 고도의 정책 결정 사항과 관련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담당자를 문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도록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자체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적극행정 징계면책 요건 정비(안 제2조의2)
- 나. 수사기관이 통보한 ‘기소유예 결정 및 그 밖의 결정’ 처리기준 변경(안 제3조)
- 다. 채용비리의 징계감경 제외(안 제5조제2항)
- 라.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와 주요 비위 은폐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 및 징계감경 배제 적용(안 별표 1)
- 마.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안 별표 4)
- 바. 징계부가금 제도개선(안 별표 5)
- 사.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에 대한 실무진 징계 제외(안 별표 6)

◆ 서울특별시동작구 규칙 제87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행동강령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동작구청장 이 창 우 인
2019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동작구공무원”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으로, “다음 각목의”를 “다음 각 목의”로 한다.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직접”을 “직접적으로”, “다음 각목의”를 “다음 각 목의”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금전적”을 “재산적”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13조의3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4조의3(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
-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 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2호의9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를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 등의 수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반 하는지”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실시”를 “실시하여야 하고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별지 제2호의9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2호의9서식]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 개정이유

「공무원 행동강령」및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신설된 내용을 반영하고 조문의 문구를 수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공무원 행동강령」및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직자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조항과 처리 서식 반영
(안 제13조의3, 안 제14조의3, 별지 제2호의9서식)
- 나. 행동강령 교육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22조)
- 다. 행동강령책임관의 상담업무에 신설 규정을 추가(안 제18조)

◆ 서울특별시동작구 규칙 제876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동작구청장 이 창 우 인
2019년 10월 17일

제1조(목적)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감경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청소년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위반자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별표 11의 각 항목의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 ① 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은 영 제44조제2항 별표 11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은 별표1과 별표2와 같다.
- ③ 감경기준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감경비율이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 (기소유예자 및 선고유예자는 제외한다)
3. 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이 있는 경우
4. 법 위반행위가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등 고의성이 명백하거나 상습적인 경우
5. 청소년선도·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 지탄이나 사회문제의 대상이 된 경우

제5조(감경신청 및 절차) ①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청소년 보호법」 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 ②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증빙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 당사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대장관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과징금 감경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파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별표 1] 공통기준 : 감경 50% 적용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공통기준

위반행위	과징금액	감경대상	감경비율	증빙서류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 11]에 따른 위반행위	해 당 위반행위 과징금액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급여 대상자	50%	수급자 증명서 등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③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등
		④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심한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등
		⑤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등 확정처분을 받은 사람		검찰,법원서류 등
		⑥ 「민법」에서 정하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법원 관련서류
		⑦ 위반일 기준 1년 이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정하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피해자 (피해금액이 과징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		행정기관 피해사실 확인서 등

[별표 2] 개별기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11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징금에 대한 감경률 적용기준

위 반 행 위	과징금 금액	위반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률		
		50%	30%	20%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	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	판매 등 금액이 3만원 이상 5만원 이하
2.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 (법 제22조)	위반 횟수 마다 1,000만원	매체물 수량이 10개 미만	매체물 수량이 10개 이상 30개 미만	매체물 수량이 30개 이상 50개 미만
3. 청소년에게 주류 또는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	위반 횟수마다 주류 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판매액이 1만원 미만	판매액이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	판매액이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4. 청소년에게 환각물질이나 약물 또는 청소년 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판매액이 1만원 미만	판매액이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	판매액이 3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5.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 또는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중 영업장을 벗어나 배달·판매하게 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법 제29조제1항)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 청소년고용금지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법 제29조제1항)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법 제29조제2항)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출입인원이 3인 미만	출입인원이 3인 이상 7인 미만	출입인원이 7인 이상 10인 미만
8.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가부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법 제30조제7호)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기소유예·선고유예 처 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9.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0조제8호)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기소유예·선고유예 처 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10. 주로 차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 (법 제30조제9호)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기소유예·선고유예 처 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준수 서약서

대 상 자 인 적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업 소 명		업 종	
	업소소재지			
법적근거			과징금액	
감경사유			감경 후 과징금액	
위반내용				
재발방지 방 안				

상기 본인은「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숙지·준수하여 「청소년 보호법」제4조에 따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며 법령 위반 사실이 또 다시 발생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이에 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 상 자 : (서명 또는 인)

동 작 구 청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업소명 (소재지)			
	위반일자		위반내용	
감경처 분	감경사유			
	감경내용	당초 부과액 : 감경 부과액 : 감 경 사 유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이 감경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 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동 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 제정이유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감경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가. 과징금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 세분화 (안 제3조)

- 공통기준 : 감경 50% 적용(안 별표1)
- 개별기준 : 감경 20% ~ 50% 적용(안 별표2)

나. 과징금 감경제외 대상 (안 제4조)

- 「청소년 보호법」을 2년 이내 1회 이상 위반한 자
- 의견제출을 아니하거나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체납한 자

다. 감경신청 및 절차 (안 제5조)

- 감경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 감경처분시 감경결정서 통지

◆ 서울특별시동작구 규칙 제87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동작구청장 이 창 우 인
2019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설 운영상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휴관일을 정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범위 안”을 각각 “범위”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청소년시설”을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시설 및 청소년단체”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제2항제1호의 개정 규정에 따라 이 규칙 시행일 현재 근무 중인 종사자에 대하여 소급 적용한다.

[별표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정기 휴관일(제3조 관련)

휴 관 일	시 설 명
매주 월요일	노량진1동 청소년독서실, 상도4동 청소년독서실, 사당4동 청소년독서실, 동작 청소년문화의집, 사당 청소년문화의집
매주 화요일	상도3동 청소년독서실, 사당3동 청소년독서실, 흑석 청소년독서실
1월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선거일	흑석 청소년독서실, 사당3동 청소년독서실, 노량진동 청소년독서실 상도4동 청소년독서실, 상도3동 청소년독서실, 사당4동 청소년독서실, 사당 청소년문화의집, 동작 청소년문화의집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개정이유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청소년시설 종사자의 주 1회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청소년문화의 집 종사자 경력 인정범위 확대로 현장근무 종사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업무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청소년시설 휴관일 변경(안 제3조, 별표2)

- [별표 2] 청소년시설 정기휴관일 변경 : 주 1회 휴관

나. 청소년문화의집 종사자의 근무경력 인정(안 제5조제2항제1호)

- 청소년 단체 근무경력 10할(100%) 인정 추가

인사발령

[발령 제194호]

연번	성명	발령사항	현직	
			부서	직급
1	권준성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휴직을 명함 (2019년10월17일부터 2021년7월28일까지)	도로관리과	지방공업서기(전기)

2019. 10. 17. 字.

[발령 제196호]

연번	성명	발령사항	현직	
			부서	직급
1	류남숙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5호 규정에 따라 휴직을 명함 (2019년10월21일부터 2020년4월20일까지)	부동산정보과	지방행정주사보
2	이효정	복직을 명함 기획재정국 재무과 근무를 명함	주택과	지방행정서기보

2019. 10. 21. 字.

[발령 제197호]

연번	성명	발령사항	현직	
			부서	직급
1	박은주	복직을 명함 도시관리국 주택과 근무를 명함	감사담당관	지방행정서기

2019. 10. 25. 字.

[발령 제198호]

연번	성명	발령사항	현직	
			부서	직급
1	이민희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 규정에 따라 휴직을 명함 (2019년10월28일부터 2020년10월27일까지)	어르신청소년과	지방행정주사보

2019. 10. 28. 字.

[발령 제199호]

연번	성명	발령사항	현직	
			부서	직급
1	유솔기	복직을 명함 노량진제1동 근무를 명함	어르신청소년과	지방사회복지주사보

2019. 10. 29. 字.

동
작
구
보

제
1
6
2
5
호

동
작
구



www.dongjak.go.kr

 동 직 구